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회원권리 보호 〉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85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회원권리 보호(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8조 등)	2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1.

다. 회 부 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도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의 이해 충돌 행위 및 방만 경영, 저작권료의 부적정한 분배 등 권리자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여 회원의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및 제108조 등).

Ⅲ. 검토의견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회원권리 보호(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 등)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어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해석상 분쟁해결이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105조제12항, 제105조의2 등).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전자적 방식의 총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5조의3, 제10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⑪ (생략)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저작권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u> 또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현행	개정안
<u>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u>.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u> 1. <u>저작권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2. <u>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u> 3. <u>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u> <u>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u> ① <u>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u>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u>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u> 1. <u>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u> 2. <u>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u>

현행	개정안
<신설>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0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제의 운영,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현행	개정안
제108조(감독) ① (생략)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u>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u> 할 수 있다.	제108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 ----- ----- <u>다음 각 호의</u> ----- -----.
<신설>	1. <u>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u>
	2. <u>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u>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u>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u>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u>100분의 1</u>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 ----- ----- ----- ----- ----- ----- ----- <u>100분의 3</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저작권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1)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제108조(감독)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0조(청문)

제111조(과징금 처분)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에 대한 승인, 업무규정·재무정보 공개, 보고·조사 및 명령 등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용허락 거부금지, 통합징수, 회계·운영자료 공개, 위반 시 업무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허가의 유효기간이나 재허가 절차, 저작권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회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허가 이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자의 참여와 통제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해석상 분쟁이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규정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²⁾ 저작권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만료 후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사후적 관리·감독 수단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이후 장기간에 걸친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허가 이후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³⁾

아울러, 개정안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

- 2)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방만 경영과 관련하여, 회장 임금의 과도한 인상 및 소급지급, 임원 업무추진비·회의비·출장비 등의 과다 집행, 자문비 및 비상임이사 회의비의 과도한 지급,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3)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입법이 곧바로 기존 허가자의 기득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장래를 향하여 허가 존속 조건을 변경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러한 점에서 신뢰보호원칙과의 관계에서도 재허가 제도 도입 자체에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 198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는 분야별 총 12개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음.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집중 관리 분야>

영역	단체명	집중 관리 분야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의 권리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의 권리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악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어문, 사진, 연극, 영상, 미술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 제작자의 권리
	한국영화배급협회	영상 제작자의 권리
방송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방송 실연자(텔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의 권리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자의 권리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저작권법상 권리

(자료: 2024 저작권백서)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와 관련한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재산권자에게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부여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권리자의 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회원의 의사가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전자적 방식의 총회 개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제도의 도입,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변경 사유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회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재산권자 권리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다수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상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등 사후적 감독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제도 등은 단체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중장기 투자 및 인력 운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승인 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변경 확대는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행정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함께 제시함.

반면, 이용자 단체 및 일부 콘텐츠 업계에서는 일부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불투명한 사용료 산정·운영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1

신탁단체, 이용자 의견

○ 신탁단체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진흥재단 (26.1.16.)	<개정안 제105조의2 삭제 필요> • (제105조의2) 갱신지연 또는 불허로 법적 권한에 공백 발생 시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차질 우려 - 현행법상 관리·감독 및 허가취소로 신탁관리단체 규제가 가능하고, 신탁관리단체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저작권자 및 이용자에게 법적 불확실성 초래 우려
(사)한국음악 실연자연협회 (26.1.20.)	<개정안 제105조의2 및 제108조 제2항 제2호 삭제 필요> • (제105조의2) 수만 명의 권리자와 장기간 권리관계를 구축·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저작물 DB 및 정산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업무주체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필수적임 - 5년 단위의 허가 유효기간 설정은 신탁관리단체의 중장기 사업 추진 의지를 위축시키고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재허가 심사기준인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함 • (제108조 제2항 제2호) 조직운영에 대한 업무명령은 민간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훼손할 수 있음
(사)한국음반 산업협회 (26.1.20.)	<개정안 제105조의2 삭제 및 부칙 제2조 수정 필요> • (제105조의2) 신탁관리단체의 인력과 조직,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권리자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시정명령 횟수를 재허가 심사기준에 반영한다면 경미한 지적 사항까지 누적되는 바, 중대한 법 위반 또는 반복적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한정할 필요 있음 • (부칙 제2조) 개정안은 기존 허가 단체에 대해 단기간 내 전면적인 재허가 심사를 예고하는 것으로, 3~5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사)한국방송 실연자관리협회 (26.1.20.)	<개정안 제105조 제12항 및 제105조의2 삭제 필요> • (제105조 제12항)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며,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의 협상 결과물인 사용료 협약의 존속을 불안정하게 함 - 승인된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행정비용 증가 및 협회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제105조의2) 현행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고, 해외 유사사례가 없음에도 재허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하며, 행정상 과중한 부담을 발생시킴 - 방송의 경우 최근 재승인·재허가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 바,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은 지나치게 짧음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사)한국방송 작가협회 (26.1.21.)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3 외에 현행 유지 필요> • (제105조 제12항)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전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불필요함 • (제105조의2) 허가권자의 재량을 확대하여 신탁관리단체의 존속 및 운영 안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 • (제105조의3)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 • (제106조의3)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 - 다만, 등급제 운영과 전자총회 개최는 신탁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108조 제2항) 신탁관리단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 • (제109조 제1항 제10호) 업무규정에 대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지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존립이 불안정해짐 • (제111조 제1항)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고의·반복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어 상한의 일괄 상향은 과도함
(사)한국음악 저작권협회 (26.1.2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삭제 필요> • (제105조의2)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연속성·안정성을 훼손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사용료 징수·분배 공백과 이용질서에 혼란 초래 가능 -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관리·감독 수단에 더해 재허가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제재임 •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3) 총회 의결권 구조와 회원 등급제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단체 자율성과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이용자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케이블TV방 송협회 (26.1.20.)	<전부 동의> • (제105조의2) 재허가 심사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체계 형성을 통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됨 -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 제도는 허가 이후 지속적인 평가·퇴출수단이 미흡하여 일부 신탁관리단체의 운영상 비위, 불투명한 사용료 산정,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문제되어 왔음
OTT음악저작권 대책협의체 (26.1.20.)	<전부 동의> • (제105조 제12항)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변경 권한을 구체화함으로써 신탁관리단체·이용자·권리자 간 이해관계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음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 다만,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제2호의 징수규정 해석 차이의 범위, 제3호의 통일성 확보 대상 등을 구체화할 필요 있음 • (제105조의2) 일부 신탁관리단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사용료 징수로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 - 재허가 심사를 통해 합리적 사용료 체계 형성과 절차적 통제 강화를 통해 저작물 이용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산업 전반의 신뢰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105조의3) 총회의결권뿐만 아니라 ▲권리의 분리신탁, ▲임·직원 보수·수당 결정권 등 박정하 의원이 기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회원의 권리도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제106조의3) 내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대표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제108조 제2항) 신탁관리단체의 자의적 규정 운영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필요함 - 일부 신탁관리단체가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1개월 내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함 • (제111조 제1항) 대규모 징수·분배를 담당하는 신탁관리단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기여하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비합리적·불공정 사용료 징수행위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 과징금을 이용자측 피해 회복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6.1.21.)	<전부 동의> • (제105조 제12항) 대다수 이해관계자가 합의하더라도 특정 신탁관리단체의 반대로 사용료 징수규정이 원만하게 개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산업 안정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 안정적 산업환경 조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문체부 장관의 사용료 징수규정 변경권한 필요
케이티지니뮤직 (‘26.1.21.)	<전부 동의> •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드림어스컴퍼니 (‘26.1.22.)	<전부 동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 전반의 내용에 동의함

○ 유관단체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음악콘텐츠협회 (‘26.1.23.)	<전부 동의> • (제105조 제1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내용 변경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있음

참고2

해외사례

국가명	내용
프랑스	「저작권법」 제321-1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그들이 대표하는 권리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권리보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거나 권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의무를 이 보유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제323-1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규칙을 규정하고 의사결정 시에 각기 다른 회원 집단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한다. 제323-8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모든 회원은 법률, 정관 및 일반규정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가 있다. 단체 회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는 회원 가입 기간 또는 회원의 저작재산권 이용에 따라 받았거나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수입 액수에 따라 정관 또는 일반규정으로 제한하되, 이러한 제한은 결합이 가능한 위에 언급한 기준들이 공평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정의되어 이에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일본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제20조(업무개선명령) 문화청장관은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의 업무 운영에 관하여 위탁자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자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에게 관리위탁계약 약관 또는 사용료 규정의 변경이나 그 밖의 업무 운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④ 문화청장관은 이용자 대표가 협의를 요구하였음에도 지정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가 해당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이용자 대표로부터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해당 지정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에게 그 협의의 개시 또는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① 전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에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그 당사자는 해당 사용료 규정에 관하여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사용료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재정이 있었을 때는 해당 사용료 규정은 그 재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변경한다.
독일	「집중관리단체법」 제16조(참여의 원칙) 집중관리단체는 정관에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회원 및 자격 있는 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 다양한 범주의 구성원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대표되도록 보장할 것
호주	「경쟁법」 제88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이 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ACCC는 어떤 사람이 신청한 경우, 그 신청서에 명시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에 제4부 제1구(경쟁제한적 합의·공동행위) 또는 제2구(일방적 행위·거래제한) 중 하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